

■ 논 단

중재산업진흥법에 대한 평가 및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정정책적 제언

오 현 석

계명대학교 국제통상전공 교수 / 법학박사

요 약 문

우리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이 해외에서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됨으로 인해 매년 큰 폭의 법률서비스 적자가 발생하였고,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 역시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이에 국제중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을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 부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법무부가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중재산업진흥법'과 이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 우리의 국제중재 역량을 오히려 퇴보하였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의 추진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이다.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시작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기존 부진했던 실적들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기본계획 추진 실적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우선 법무부의 실효적이지 못한 재정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인건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없이 사업비만을 지원하다 보니 충분한 성과를 얻기 어려웠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국제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모든 사업 위탁이 상사중재원에 집중되었고, 상사중재원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부재 역시 패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추진되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한계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각계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특정 기관이 독점했었던 사업들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에게 분산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중재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상사중재원으로부터 분리·독립된 새로운 국제중재기관을 설립하고, 동 기관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과 정책의 추진을 통해 국제중재 중심지로의 부상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중재산업진흥법, 중재법,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법무부, 상사중재원, 중재지, 국제중재기관, 홍콩국제중재센터,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 < 목 次 > —

I. 서 론	2.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재
	3. 특정 기관의 사업 독점
II. 중재산업진흥법 제정 의의 및 주요 내용	4. 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에 대한 소극적 인식
1. 중재산업진흥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5. 기타
2.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	
III. 중재산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추진현황	V.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1. 중재산업 기반 강화 사업	1. 중재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정책 보완
2.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2. 중재산업 수행 주체 다변화
3. 국제중재 사건 유치 확대	3. 국제중재기관의 분리·독립을 통한 역량 강화
IV.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4.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
1. 재정적 지원 부족	

I. 서 론

20세기까지 국제중재는 국제무역 및 투자를 위한 지원 내지 기반 시스템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즉, 국제무역 및 투자 관련 상사분쟁 해결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제무역 및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당시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전후(戰後) 세계 경제 재건 및 국제통상 부흥을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가 설립되었고, 곧이어 1923년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이 발족되었다. 아울러, 같은 해 중재판정의 국제적인 집행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네바의정서'가 채택되었고, 1927년 동 의정서의 문제점과 한계를¹⁾ 보완한 '제네바협

1) 제네바의정서에서는 i) 계약국으로 하여금 현재 및 장래의 분쟁에 관한 중재계약의 유효성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ii) 계약국은 그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의정서는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침묵함으로써 집행국의 입법에 맡겨지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1927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네바협약이 체결되었는데, 동 협약에서는 계약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모든 계약국 내에서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하도록 하였고, 중재판정 집행신청인이 행할 절차와 형식을 규정하였다. 이는 추후 1958년 뉴욕협약의 토대가 되었다.

약'이 마련되었다.²⁾ ICC 국제중재법원의 설립 및 국제중재 관련 조약의 체결 등 당시 국제사회의 일련의 작업들은 국제상거래분쟁을 중재로 해결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³⁾ 우리 역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한 이래 교역량의 증가와 이로 인한 클레임의 급증에 따라 정부와 상공업계는 1966년 중재법을 제정하였고, 곧이어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상사중재원')을 설립하였다.⁴⁾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국제중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중재기관을 국제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 성격으로 보았던 기존과는 달리, 홍콩과 싱가포르는 1980년대 이후 뒤늦게⁵⁾ 중재기관을 설립하면서 국제중재를 일종의 '법률서비스'로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즉, 홍콩과 싱가포르는 자국의 중재기관인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HKIAC')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SIAC')에서 국제중재 사건들이 진행하게 될 경우, 자국 로펌 등 법률서비스 산업은 물론 부수적으로 교통·숙박 등 관광산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제중재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일종의 '서비스 산업'으로 인지하고,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자국을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로 하는 국제중재 사건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⁶⁾ 그리고, 그러한 투자에 대한 성과는 이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제 세계 3대 주요 중재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⁷⁾ 홍콩과 싱가포르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다수의 국가들은 2010년대 이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국제중재 시장을 두고 첨예한 경쟁을 벌여 나갔다.⁸⁾

우리 역시 2010년대 초반 국제중재 커뮤니티를⁹⁾ 중심으로 서울을 국제중재의 '중재지'로 부

-
- 2) 중재판정의 국제적인 승인·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연맹주도하에 1923년 9월 24일 제네바에서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s)'가 서명되었고, 1927년 9월 26일 제네바에서 역시 서명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채택되었다.
 - 3) ICC 중재법원 이전에 이미 1883년 4월 5일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이 설립되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 4) 1966년 3월 16일 중재법(법률 제1767호)을 제정·공포하였고, 1966년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부설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상사중재원 전신)를 발족하였다.
 - 5) 아시아 주요 중재기관 중 일본상사중재협회(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는 1950년에 설립되었고,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은 1954년에 설치되었다.
 - 6) 지성배, "중재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통상법률(2017-8), 5면.
 - 7)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IA), Queen Mary University, "2021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Adapting arbitration to a changing world", 2021., p.10.
 - 8) 호주의 ACICA(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말레이시아의 KLRCA(Kuala Lumpur Regional Centre for Arbitration), 오스트리아의 VIAC(Vienna International Arbitral Centre) 등 다수의 국제중재기관들이 자국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아래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한 국제홍보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 9) 국제중재실무회가 법무부로부터 2022년 위탁받은 『국제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용역보고서』 8페이지에서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중재와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중재 전문번호사 및

4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3호 (2023.7.)

상시키려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3년 5월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이하 'SIDRC')가 출범되었다. SIDRC는 서울을 동북아 지역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국제중재 사건을 서울에 다수 유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¹⁰⁾ SIDRC의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적자를¹¹⁾ 해소하려는 법무부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여, 2017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재산업진흥법') 제정을 이끌어 내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중재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2018년 말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총 5개년 계획인 기본계획은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중재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재기관 역량 등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기본계획 시행 5개년의 종반기로 접어드는 현재 시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법률서비스 분야의 무역적자 폭이 예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¹²⁾ 이는 국제중재 사건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 등에 매진해 온 한국 로펌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¹³⁾ 또한, 우리 중재인들이 국제상사중재는 물론 국제투자중재에서도 중재인으로서 활약하는 등 중재전문가들의 역량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¹⁴⁾

반면, 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사건 실적은 중재산업진흥법 시행 이전에 비해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감소 추세를 일정부분 감안하더라도 다른 중재기관에 비해 유독 그 하락 추세가 심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중재 관련 저명한 외국 저널에 상사중재원에 관한 비판적인 기사가 게재되는¹⁵⁾ 등 국제중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상사중재원 내부적으로도 국제중재센터 조직이 축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제중재 전문인력의 퇴사가 이어지는 등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¹⁶⁾ 이로 인해 한편에서는 국제중재의 독립성과

교수 등 전문가·실무가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0) SIDRC가 설립 후 상사중재원과 통합되기 이전까지의 국제중재 사건 유치 실적을 보면, 2013년 3건, 2014년 15건, 2015년 35건으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출처 : 국제중재실무회, 『복합중재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7년 6월, 301면)

11)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분야 국제수지 적자는 2018년 기준 6,800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의 분쟁 사건을 외국의 중재센터에서 해결하면서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됨으로 인한 것이었다. 일례로 2015년 현대건설은 두산중공업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신청 시 최종 판정이 내려진 2019년 7월까지 중재비용과 항공료 등으로 약 20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출처 : 이미호, "국제중재 허브, 싱가포르를 가다", 조선BIZ, 2022년 1월 7일)

12) 2021년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9억 6,860만 달러이고, 지급 규모는 15억 2,270만 달러로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5억 5,410만 달러이다.

13) 홍수정, "법률서비스 무역 수입 또 신기록", 법률신문, 2022년 2월 16일.

14) 천민아, "국제중재인 늘어 韓 사법 역량 커지기를", 서울경제, 2022년 6월 29일.

15) Global Arbitration Review, "Korean centre in crisis as tensions come to the fore", 01 December 2022.

16) 국제중재실무회, 『국제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용역』, 법무부 용역보고서, 2022년 12월, 39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 기능을 분리하여 새로운 국제중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등¹⁷⁾ 국제중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동북아시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부상하겠다는 우리의 도전은 국제중재 시장에서 일본¹⁸⁾ 등 주변국들만 자극하였고, 동북아시아 국제중재에서의 우리의 위상은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점차 가속화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더하여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무역 제재의 확대 속에서 부득이한 국제상사분쟁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⁹⁾ 또한, 룩스타-대한민국²⁰⁾ 및 엘리엇-대한민국²¹⁾ 간 국제투자중재(이하 'ISDS')가 최근 연이어 종료되고 우리로서는 나름 선방한 판정결과를 얻어냈지만, 외국인투자자의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국제중재 역량 강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재산업 진흥의 주체들이 현실에 안주한 채 분발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구상했던 동북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서의 위상은 한낱 신기루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중재산업의 위기와 난관을 타개해 나갈 새로운 전략과 정책 추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법무부가 수립한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또다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의 중재산업을 한층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은 설계도 내지 나침반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재산업의 현황과 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 및 진단이 선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정확하고 적절한 처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 시행 마지막 5년 차인 현 시점에서 중재산업진흥법, 기본계획, 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제중재산업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²³⁾ 부진한 실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통해 차기 '기본계획'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제언을 한다.

17) 국제중재실무회, 앞의 보고서(2022년), 117면.

18) 일본은 우리나라의 SIDRC를 모방하여 2020년 3월 도쿄에 국제중재 심리시설인 JDIRC(Japa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re)를 설립하였고, 이듬해 2월에는 오사카에 역시 JIDRC를 개설하였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국제중재를 프로모션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재법을 개정 발표하였다. (출처 : 로펌 Mayer Brown 블로그, "Japan Continues Efforts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Country with Revisions to Arbitration Act", 2023년 5월 6일)

19) 서민지, "무역 제재로 공급망 관련 기업 분쟁 증가 예상", 아이뉴스24, 2022년 5월 10일.

20)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21) Elliott Associates L.P.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1.

22) 최진석, "제2 룩스타 사태 언제든 온다. 국제중재 역량부터 키워라", 한경오퍼니언, 2022년 9월 13일.

23)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국제중재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중재산업진흥법 제정 의의 및 주요 내용

1. 중재산업진흥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가. 국제중재산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중재를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하고 많은 물적 투자와 법제도 개선 등²⁴⁾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의 중재산업 발전을 지원하였다. 특히 싱가포르는 2009년 종합적인 분쟁해결시설을 표방하는 Maxwell Chambers를²⁵⁾ 건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싱가포르를 매력적인 중재지로 만들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고, 그 결과 비교적 단기간 내에 주요 국제중재 중심지로 도약하였다.²⁶⁾ 이에 자극을 받은 홍콩 정부도 기존 심리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분쟁해결시설 개선계획을 공표하면서 아시아 제1의 ‘중재지’로서의 위상을 두고 싱가포르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였다.²⁷⁾ 국제중재 중심지 선점을 둘러싼 싱가포르와 홍콩의 노력은 SIAC과 HKIAC의 국제중재 사건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실로 이어졌고, 두 기관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중재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반면, 국제중재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는 국제중재를 여전히 국제무역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로만 볼 뿐 이를 ‘산업’으로 보지는 않았었다. 우리 기업들이 ICC, SIAC, HKIAC 등 국제중재기관의 주요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²⁸⁾ 국제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전무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교역 확대 및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 진행되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중재 사건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적자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국제중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즉, 국제중재 사건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여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에서의 분쟁해결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가 국제중재 커뮤니티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다.²⁹⁾ 특히, 지리적으로 세계 최대 교역국인 미국, 중국, 일본의 중

24)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변호사가 국제중재를 대리하는 데 비자가 필요 없고 소득세도 매기지 않는다. 또한, 외국 로펌이 싱가포르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 세금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국제중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5) 2005년 싱가포르 법무부가 전 세계 중재센터들을 방문하고 조사하면서 복합 분쟁해결센터 건립을 계획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1월에 이전 Customs House에 새로운 중재센터를 건립하였다. 총 4층 규모의 독립 건물에 39개의 심리실과 준비실, 그리고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등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26) 이영석, “동아시아 중재산업 현황 및 우리나라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2017., 362면.

27) GAR, “Hong Kong unveils plans for disputes hub”, 18 May 2015.

28) ICC 중재사건 당사자 가운데 우리 기업은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다음 3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간지점에 위치해 있는 이점을 활용하고, 대륙법계 국가로서 영미법계인 싱가포르 및 홍콩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면 우리 역시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³⁰⁾ 이러한 확신에 따라 2013년 5월 국제중재 커뮤니티의 주도하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시, 상사중재원이 공동 출자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중재심리시설인 SIDRC를 설립하였다. 국제중재 커뮤니티의 헌신과 노력으로 SIDRC는 다수의 ICC 중재심리를 유치하는 등 국제적인 인지도와 위상을 점차 높여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공가능성을 확인한 법무부 역시 국제중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무부가 국제중재산업 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지원기관' 성격이었던 상사중재원을 '법률서비스기관'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아래³¹⁾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이전하였다.³²⁾ 이후 법무부는 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국제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중재산업진흥법의 의의 및 목적

국제중재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시설과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중재 법령 및 제도의 완비, 전문인력의 양성, 수준 높은 중재기관의 운영, 중재 전문 법원·재판부의 육성 등 여러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의 발전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중재 활성화 및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³³⁾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중재산업 발전의 중심축을 세우고, 단기적으로 국제적인 규모의 분쟁해결시설을 설립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국제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³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중재산업 진흥의 기반조성 및 국제중재 유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³⁵⁾

29) 조대연, “중재에 대한 단상과 국제중재 활성화”, 계간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봄호, 8면.

30) 황현영,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제107호), 국회입법조사처(2019. 12.), 11면.

31) 성준호,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중재연구(제27권 제4호), 2017. 12., 57면.

32) 법무부는 2014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의 소관부처를 이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상사중재원과의 협의를 시작하였고, 2016년 5월 20일에 개최된 대한상사중재원 임시총회에서 중재산업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주무관청을 법무부로 변경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33)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16년 8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2016년 12월 27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4471호로 제정되었다.

34) 국제중재실무회,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해설”, 법안 제정위원회 4차 회의자료(2015. 7. 24.), 2면

2.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

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설계도를 작성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 마련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 관련 ‘진흥법’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항을 필수적으로 두고 있다.³⁶⁾ 중재산업진흥법 역시 제3조에서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라 법무부는 2018년 12월 말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언론 등에 공표하였다.³⁷⁾

나. 중재산업진흥 기반의 조성

법 제4조는 중재산업진흥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중재산업진흥 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그 밖에 중재산업진흥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업, 중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중재산업 실태 및 통계 조사,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운영, 정부·공공기관의 중재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에 대한 중재제도 이용의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 요소 중 하나가 시설기반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Maxwell Chambers 건립이 싱가포르 국제중재산업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시설기반 마련이 중재산업진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중재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은 국제중재

35)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내부의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계획 등만 수립되어 있을 뿐 중재산업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36) 건설기술진흥법(법률 제18933호) 제3조, 공간정보산업진흥법(법률 제17063호) 제4조, 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 제19038호) 제3조 등 대부분의 ‘산업진흥법’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가장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다.

37) 박미영, “법무부, 내달 1일부터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 법률신문, 2018년 12월 31일.

이용자들에게 있어 중재지 및 중재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확보는 중재산업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³⁸⁾

이에 법 제4조에서는 중재산업진흥 기반조성 사업의 하나로써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쟁해결시설에³⁹⁾ 대해서는 시행령 제2조에서 i) 심리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ii) 중재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iii)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5조에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홈페이지 구축·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국제 교류·협력,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해외 분쟁해결시설에 대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라. 중재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6조 제1항에서 중재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의 마련을 법무부장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2항에서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요원의 확보 여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i) 중재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ii) 중재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동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전문인력 양성사업 역시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법 제4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주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⁰⁾

마.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중재산업 기반조성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우리나라를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 사건 유치의 증대이다. 이에 따라 법 제7조에서는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분쟁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

38)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359면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의 중심지가 되기 위하여는 우리 중재기관 뿐 아니라 국제적 상설중재기관들이 입주하여 편익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 즉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국제중재센터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39) 법 제3조 제2호 ‘분쟁해결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중재시설’이 아니라 ‘분쟁해결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해당 시설이 조정 등 다른 유형의 분쟁해결절차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제1639호) 검토보고서”, 2016년 11월, 8면)

40) 제21대 국회에서는 교육지정기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를 신설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016호, 2021년 9월)

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 법 제7조 2항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i) 중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ii) 중재산업 전문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 iii) 해외설명회·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업무위탁 및 재정지원

중재산업진흥법 제9조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법 제4조)’, ‘국제중재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법 제7조)’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동 조항에서는 구체적인 기관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시행령 제8조에서 역시 법무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다.⁴¹⁾ 산업의 진흥에 관한 유사 법률과는⁴²⁾ 다르게 중재산업진흥법에서는 위탁업무 기관에 관해 특정 기관을 지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국제중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중립성·독립성 등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법 또는 시행령에 특정 국내 중재기관 등을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로 사료된다.⁴³⁾

아울러, 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법 제5조)’,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법 제6조)’,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법 제9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조항은 중재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1) 법무부는 중재산업진흥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복합중재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위탁기관에 관해 검토를 한 바 있다. 본 용역보고서에서는 기존 상사중재원에 위탁하는 방안과 별도의 법인 설립을 통한 방안을 두고 비교·분석하였으며, 결론적으로는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위탁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었다. (출처 : 국제중재실무회, 『복합중재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7년 6월.)

42)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6조의 ‘이용자 보호시책’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다수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탁기관을 법이나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3) 중재산업진흥법 초안에서는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상사중재기관’을 명시하였고, 또한 제2항 제1호에서 육성기반 조성사업에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법률안 검토과정에서 상사중재원은 법상 명시적으로 ‘상사중재원’을 규정하는 것은 외국기업 및 로펌 등 다수의 국제중재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중재기관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안에서 삭제되었다. (출처 : 상사중재원, 상사중재 육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5년 6월 29일)

사. 자율적 운영의 보장

법 제10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 대해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중재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해당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사중재원 최고이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이사 구성 현황을 감안하면,⁴⁴⁾ 실질적인 독립성·중립성 보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⁴⁵⁾ 다분히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중재산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추진현황

1. 중재산업 기반 강화 사업

가. 중재전문인력 양성

(1) 기본계획

중재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중재전문인력 양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내 중재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선발을 통한 외국 중재기관 방문 및 실무수습 과정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상사, 건설, 해사, IT 등 주요 분야별 중재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온라인 교육과정(e-learning)을 개설하여 수강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경감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중재인력 전문화를 위해 상사중재원 산하 중재 전문인력 양성 전담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동 중재교육원을 중재산업진흥법 제6조의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재절차 진행 관련 필수 교육과정 개설·운영, 심화 교육과정 운영, 객관적인 평가지표개발 등을 통해 단계별 중재인 자격 인증제도 도입 역시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영국 공인중재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이하 ‘CIArb’)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재인 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고,⁴⁶⁾ 외국 중재 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 및 등급 취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44) 상사중재원 정관 제13조 제4항에서는 법무부 법무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등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5) 안재명, “상사중재원 원장 선임과정 또 ‘뒷말’ 무성”, 법률신문, 2021년 9월 16일.

46) 영국 공인중재인협회(CI Arb)는 개별 중재인의 전문성에 기반한 단계별 인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중재인을 Associate, Member, Fellow, Chartered Arbitrator 등의 4단계로 구분하고, 상급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기술심사 통과 등이 요구하고 있다.

(2) 추진현황

중재인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이다. 시행령 제6조에서는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을 법무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⁴⁷⁾ 그리고, 그러한 교육 주관기관으로는 현재 상사중재원이 유일하게 지정되었다.⁴⁸⁾ 따라서, 중재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은 상사중재원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이미 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인 교육(중재판정문 작성 이론교육 및 실습, 3일 과정), 국제중재 전문가과정(주제별 국제중재절차 실무사항, 5일 과정), 서울국제중재아카데미(국제중재 이론 및 최신 실무, 5일 과정), 중재전문가아카데미(최고경영자 교육과정, 주 1회 총 16주 과정),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건설분쟁해결 관련 실무사항, 2일 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중재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개진해 왔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상사중재원은 ADR 기본과정(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관련 종합 입문 교육과정, 온라인 1일 과정), 국내중재전문가과정(온라인 과정, 총 8개 강좌), 엔터테인먼트 중재전문가과정(국내중재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 2일 과정)을 개설하는 등 중재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국제중재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국제중재 전문가과정’ 외에는 별다른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교육 이수 후 단계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내용 역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이러한 인증제도는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1) 기본계획

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한국중재학회 등 학술단체, 사내 변호사 등 기업인, 건설·해운 등 각종 산업별 단체들과의 상시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하는 상시 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중재기관, 학계, 실무계

4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검색 시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 중입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8) 상사중재원은 법무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중재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20일 ‘중재교육원’ 설립·개원식을 개최하였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연구용역, 학술대회 등을 활용한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2)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중재산업진흥법 제정 이전부터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2006년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을 수용하여 2016년 중재법을 개정하는 등 중재 관련 국제 표준을 따르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이후에는 중재 관련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실적이 전혀 없는 듯하다. 다만, 최근 국제중재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내 법원 체계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여 중재 관련 임시적 처분신청, 중재판정의 취소신청 및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등을 영어로 심리하게 하는 방안이 지지를 받고 있다.⁴⁹⁾ 이외에도 중재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의 영문번역과 이러한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할 포맷의 개발, 외국법자문사(FLC) 및 해외 로펌들의 국내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련 법의 개정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무계·학계의 제도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최근의 국제중재 동향에 부합하는 입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중재 관련 국제 규범의 변화를 확인하고 현황을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할 수 있는 위원회나 포럼 등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⁰⁾

2.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가. 세계적 수준의 분쟁해결시설 운영

(1) 기본계획

심리시설 확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 당시 상사중재원의 시설 현황은 대형심리실 1개, 중형심리실 2개, 심리준비실 6개 등(총 면적 약 332㎡)으로 타 국제중재기관에 비해 매우 협소한 상태였다. 2013년에 신설된 국제중재심리시설인 SIDRC 역시 대형심리실 1개, 중형심리실 1개, 중재인실 1개, 심리준비실 2개 등(총 면적 약 403㎡)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해 다수의 당사자들이 심리에 참석하는 국제사건의 경우 현재의 심리실 규모상 수용 불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일이 다반사였다.⁵¹⁾ SIAC, HKIAC 등 해외 유명 중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심리

49) 싱가포르는 2015년 1월 국제상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ICC)을 개원하였으며, 이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일부로서 국제적인 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대법관이 지명한 싱가포르 또는 다른 국가의 법관이 사건의 심리를 담당한다.

50) 국제중재실무회, 앞의 보고서(2022), 45면.

51) 2011년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간 경전철 운영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ICC에 접수되고

시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⁵²⁾ 우리의 시설은 중재심리 참석자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공간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중재산업진흥법이 제정되기 전인 2016년 하반기부터 복합중재센터(이하 '센터') 설립에 관한 작업을 추진하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18년 4월 20일에 이미 개소식을 마쳤다. 센터는 총면적 1,911㎡로 심리실 5개와 중재인 라운지, 비즈니스 센터, 도서실, 외국 중재기관 및 유관기관 입주 사무공간, 최첨단 IT기기와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갖추고 있다.⁵³⁾ 센터가 이미 설치된 상황에서 법무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다른 부문과는 달리 시설에 있어서는 기존 설립된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개선 등 일부 제한적인 계획만을 담았다.

(2) 추진현황

우선, 센터 운영의 주체에 관해 법무부는 국제중재실무의 보고서 결과에 따른 '시설만을 운영하는 별도 독립 법인'이 아닌⁵⁴⁾ 상사중재원을 운영 주체로 하였다. 즉, 싱가포르처럼 독립 시설법인인 Maxwell Chambers가 보유한 시설에 SIAC 중재기관 및 다른 국가의 중재기관들이 임차인으로 입주해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상사중재원이라는 중재기관 내에 시설인 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상사중재원의 국내 및 국제사건의 심리 시에는 당사자들이 별도의 심리실 대관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점 역시 싱가포르의 상황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자체 중재사건에는 별도의 심리실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사중재원은 중재관리비용에 있어 다른 중재기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운영방식은 법무부의 지속적인 재정보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추후 재정지원에 관한 정책 변경시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심리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임차료 역시 최근 크게 인상되었고, 제한적인 법무부의 임차료 지원으로 인해 2023년 초에는 기존 시설을 일부 폐쇄·축소하기에 이르렀다.⁵⁵⁾ 향후 심리시설의 임차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대관 수익 개선에 대한 상사중재원의 뚜렷한 대책이 부재

중재지를 서울로 지정함에 따라 상사중재원 심리실을 대관하여 심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차 심리에 참석한 40명이 넘는 당사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었고 이후 심리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52) 싱가포르의 Maxwell Chambers의 경우 초대형심리실 2개, 대형심리실 5개, 중형심리실 2개, 원형회의실 1개, 준비실 12개, 중재인 라운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총면적 약 4,500㎡), 홍콩의 HKIAC의 경우 대형심리실 3개, 중형심리실 4개, 소형회의실 10개, 도서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총면적 약 1,500㎡).

53) 시설에 대한 정식 명칭은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로 하고 있으며, 이는 애초 본 시설이 국제중재 외에 '조정' 등 ADR을 위한 시설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4) 법무부가 발주하여 국제중재실무회가 수행한 『복합중재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중재센터의 운영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위탁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기존 SIDRC와 상사중재원의 통합과정에서 상사중재원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55) 기존 무역회관 17층 시설을 폐쇄하였고, 43층의 사무국 공간을 축소하면서 그 공간에 기존 17층에 소재하였던 외국중재기관 및 IBA 사무실을 이전시켰다.

한 상황에서 향후 그 운영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서는 심리시설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심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재 상사중재원 내부에서 자체적·독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중재심리시설은 중재뿐 아니라 조정 등 ADR 전체의 교육 및 회의 등에 넓이 이용되고 활용되어야 하나, 시설 위탁기관인 상사중재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리로 인해 타 기관들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상사중재원의 제한적인 근로시간 운용으로 인해⁵⁶⁾ 심리시설의 국제경쟁력 역시 크게 저하되고 있다. 결국, 이용상 불편과 서비스 저하로 인해 국제중재 이용자들은 현재의 심리시설 이용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심리시설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 역시 실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 재정지원에 의한 심리시설은 특정 기관의 독자적인 소유가 아닌 우리나라 국제중재 커뮤니티 전체가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중재기관 역량 강화

(1) 기본계획

중재산업진흥을 위해 중재심리시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중재기관의 역량 강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이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우선 상사중재원의 사건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중재 전문인력을 충원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ICC나 SIAC 등 주요 중재기관들이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신규 중재 분야로 발굴·육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ISDS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전 세계 ISDS 현황, 외국 중재기관의 ISDS 유치 실적 등 시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계획도 포함시켰다.

(2) 추진현황

중재법에 의한 유일한 중재기관인 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2018년 2월 중재원 이사회 의결로 정관 제31조 및 직제규정 제2조를 개정하여 별도의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를 신설하였다. 국제중재센터는 저명한 국제중재인인 의장과 대형 로펌 국제중재 전문변호사 출신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초기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⁵⁷⁾ 우선, 비엔나,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에서의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56) 국제중재심리 중 해외에 있는 증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증거조사의 경우, 시차로 인해 저녁 및 심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상사중재원 단체협약상 제한적인 근로시간 운용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57) 국제중재센터는 처음 구성이 완료되었던 2018년 8월 당시 총 10명의 인력으로 시작하였으며, 추후 해외사무소 개설과정에서 현지 사무소 직원이 합류하여 총 13명으로 확대되었다.

개최하였고, 국제적인 중재 관련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주요 국제중재 전문저널을 통한 언론보도 등 활발한 활동들을 통해 초기부터 전 세계 국제중재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와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그 결과 기업들의 국제계약 시 국제중재센터를 관할로 정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등 목표했던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들과 긍정적인 신호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2021년 이후 불거진 국제중재센터 내 인력 축소 및 독립성·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국제중재산업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의장이 사임하는 등 기본계획과는 달리 조직 역량이 크게 후퇴되었다.⁵⁸⁾ 실제 국제중재에 관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상사중재원은 전 세계 중재 기관 15위권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⁵⁹⁾ 결과적으로 기본계획 중 ‘중재 기관의 역량 강화’ 부분은 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 조직 축소 및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 총체적 난국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 부문을 분리·독립하자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⁶⁰⁾

3. 국제중재 사건 유치 확대

가.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1) 기본계획

중재산업 기반강화,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국제중재 사건의 유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으로 국제중재 현황 및 발전 동향, 상사중재원에 대한 인식, 국제중재 참여자들의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할 것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국제중재 유치 실적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사건 수, 분쟁 규모, 사건 유형, 당사자 국적, 유치 성공 요인 및 외국 중재기관의 사건 유치 현황, 유치 전략 등 수집·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보 등을 통해 법무부·중재기관·실무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중재 유치 전략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중점 홍보 전략을 수립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58) 이에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전문가 줄퇴사 논란”, 문화일보, 2022년 10월 13일.

59) 퀸메리대학의 2021년 Survey에 의하면, 가장 선호하는 중재기관으로는 ICC, SIAC, HKIAC, LCIA, CIETAC, ICSID, SCC, ICDR, PCA, LMAA가 10위권에 포함이 되었고, 이외에도 유럽에서는 VIAC, DIS, 북미에서는 JAMS AAA/ICDR, 중동에서는 DIAC도 선호되는 중재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60) 국제중재실무회, 앞의 보고서(2022), 117면.

(2) 추진현황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은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현황조사이다. 즉,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제중재 현황, 상사중재원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를 삼고자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는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국제중재 유치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되고 있지 않다.

만약, 추후라도 본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면 우선 조사 주체부터 새롭게 설정해야 할 듯하다. 조사사업의 경우 그 대상과 범위에 상사중재원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의 중립성 및 실효성을 위해 상사중재원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주체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국제중재실무회, 중재학회 등 실무 및 학술단체가 본 사업을 위탁 받고, 기본계획 5개년 추진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 국제중재 유치 지원

(1) 기본계획

국제중재유치와 관련된 기본계획 중 첫 번째 사업으로 상사중재원 외국 사무소 개소 및 운영 지원 사업이 있다. 해외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홍보 및 사건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주기적으로 외국 사무소에 대한 운영 점검 및 실적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국제분쟁 가능성이 크고 사건 유치가 용이한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Seoul ADR Festival 등 국제중재 행사 개최를 통해 국제중재지로의 서울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제상사중재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ercial Arbitration, ICCA),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외국 중재기관 등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사건유치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국제중재 관련 행사를 이들 국제적인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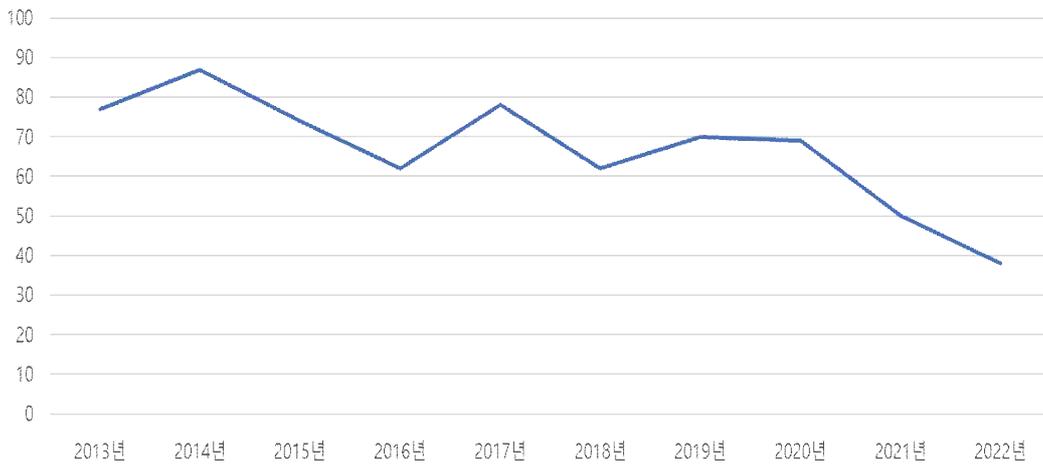
(2) 추진현황

기본계획에서는 사건유치 실적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중재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실제 국제중재 사건이 얼마나 증가하였는 가이다. 그동안 중재심리시설 설치 및 운영, 중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 보조 등 국

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한 많은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 종반인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 성과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⁶¹⁾ 접수·처리된 국제중재 사건 숫자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기본계획 시행 이전보다 더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접수사건 추이〉

(단위: 건)



2020년 초에 발생한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ICC, SIAC 등 타 중재기관의 양호한 실적을 보면 이 또한 명확한 설명이 되지는 않는다. ICC 중재법원의 경우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869건을 접수하였고, 팬데믹 이후인 2020년 946건, 2021년 853건을 접수하였다. 즉,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약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SIAC은 2019년 479건, 2020년 1,080건, 2021년 469건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2020년 집단중재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고려하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1년 중재사건의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단순 사건 수가 아닌 중재관리비용 수익하고 직결되는 분쟁금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더욱 좋지 않다. 기본계획 시행 전인 2018년 대비 2022년 분쟁금액 실적은 약 7분 1 이하 수준으로 폭락하였다. 즉, 양적인 성장은 물론 질적인 성장 모두에 있어 크게 후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61) 김한균·김명수·박노형·김세준·조수혜·송병준,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12., 80면.

〈최근 5년간 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사건 분쟁금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 수	62	70	69	50	38
신청금액	552,387	130,290	215,335	57,426	73,800

물론, 국제중재 사건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실제 분쟁 발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국제중재센터 초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국제중재사건 유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향후 몇 년간 더 주시해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저조한 성적에 대한 합리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도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그동안의 부진을 떨치고, 본격적으로 중재산업진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V.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1. 재정적 지원 부족

법무부는 중재산업진흥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 유일한 사업 위탁기관인 상사중재원에 매년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중재심리시설이 설치되기 전인 2017년 해외설명회, 홍보콘텐츠 강화, 국제중재 유치 강화 등 사업을 위해 총 1,151백만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중재심리시설을 위한 임차공간 보증금 및 임차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2,410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3,44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중재심리시설이 개소된 2018년 이후부터는 매년 25억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 항목별로 보면, 전체 보조금 중 절반 이상이 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심리시설이 입주한 건물의 임차료 인상으로 인해 시설운영비가 2019년에 비해 15% 이상 증가되었다. 따라서 전체 보조금 25억원 중 약 10억원 정도만이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나름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예 독립건물을 별도로 마련해 준 싱가포르나 정부 건물에 무상 임차시킨 홍콩에 비하면 실질적인 재정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중재 홍보사업을 보다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국제중재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무부 보조금 내역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충분

〈중재활성화 사업예산 중 대한상사중재원 보조금 편성 내역〉⁶²⁾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2년
해외 설명회	265	265	25
국제중재 행사	64	64	80
홍보컨텐츠 강화	136	136	226
국제중재 전문 교육 강화	120	202	281
국제중재 유치 강화· 해외데스크 운영	333	499	328
국내중재 설명회	114	198	80
서울국제중재센터 운영	2,410	1,178	1,345
합계	3,442	2,544	2,365

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사중재원 역시 중재사건 감소 및 이로 인한 관리비용 감소 등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중재센터 인건비를 할애할만한 충분한 여력이 없는 것 같다. 향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⁶³⁾

2.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재

중재산업진흥법을 준비하고 기본계획을 준비하던 초기에는 법무부가 주체가 되어 중재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직접 추진하기도 하였고,⁶⁴⁾ 외국의 국제중재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⁶⁵⁾ 주무부처로서 많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중재산업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전면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후선에서 관련 사업들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등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62) 신봉진,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8.

63) 황현영,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상사관례연구 제32권 제4호, 2019. 12., 280면.

64) 2016년 법무부는 스포츠중재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두고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 독립적인 형태의 스포츠 중재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출처 : 유정우, “한국판 CAS(스포츠중재재판소) 생긴다”, 환경스포츠, 2016년 8월 24일)

65) 2015년 중재산업의 육성·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출장단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중재센터(KLRCA)도 방문하였다. (출처 : 김태훈, “법률산업 ‘블루오션’ 중재 노하우, 말레이시아에서 배운다”, 세계일보, 2015년 9월 30일)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 중재산업진흥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결과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개별 사업 주체인 상사중재원 외 제3의 기관을 통한 관련 사업들의 객관적인 분석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러한 작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중재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했던 법무부 내 인력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법무부의 본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추진동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이후 국제중재산업 진흥사업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결국 법무부의 무관심과 모니터링 부재 역시 현재의 중재산업진흥 관련 저조한 실적에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다.

3. 특정 기관의 사업 독점

법에서는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제4조),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제5조), 중재전문인력의 양성(제6조),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제7조) 등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7조에서는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 국제중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의 외부 기관 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각 사업의 특성과 관련 기관들의 역량에 따라 사업들을 구분하여 분산·위탁할 수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분산·위탁에 대한 반론도 있다. 특히,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산하기관인 상사중재원 외의 다른 기관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한 기관에 집중해서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인건비나 경상비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 '사업비 지출'이 주를 이루는 사업의 특성상 타 기관의 수탁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중재산업진흥 사업의 부진한 실적은 모든 사업들이 상사중재원에 집중되었다는 데에 역시 원인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상사중재원이 중재산업진흥을 위한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조직 내부에 중재사건 유치 극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등 제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계획상의 사업들에 대한 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사중재원은 2020년 이후 중재사건 및 관리비용 감소로 인해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중재원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위탁한 중재산업진흥 사업들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세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고,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성과만을 도출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사료된다.

4. 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에 대한 소극적 인식

국내중재 조직과 국제중재센터로 분리된 상사중재원 내부에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중재 조직의 직원들과 노조를 중심으로 국제중재 업무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상사중재원과 관련된 최근의 보고서⁶⁶⁾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국제중재센터에 대한 조직 축소 및 인사이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상당부분 이해가 된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국제중재를 통한 관리비용 수익이 다소 저조한 부분이다. 즉, 상사중재원 입장에서는 국제중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였지만, 이로 인해 얻는 성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점이 국제중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키웠다고 보여진다. 상사중재원은 자체 수입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며, 자체 수입의 대부분은 중재사건 관리비용이 차지한다. 그리고, 수익구조 상 국내중재, 특히 고액사건 중심의 건설중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⁶⁷⁾ 따라서, 소위 '가성비'가 뛰어난 건설중재 사건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국제중재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고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몇 년 전에 불과하다. 통상 중재합의가 포함된 계약체결 이후 실제 분쟁발생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가 중재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적 보조는 사실상 국제중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을 통해 상사중재원은 심리시설 임차료와 다양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국제중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5. 기타

상기의 이유 외에도 우리나라의 국제중재진흥 사업이 위축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기존 싱가포르, 홍콩 이외에도 동북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를 두고 일본이 새롭게 도전장을 던지는 등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⁶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쿄 및 오사카에 일본 법무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국제중재심리시설이 개설되었고,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다. 둘째, 최일선에서 국제중재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해야 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중재 프로그램 개설이 거의 이루어

66) 국제중재실무회, 앞의 보고서(2022), 111면.

67) 2019년도 상사중재원 통계에 의하면, 전체 사건 대비 건설중재 사건의 비중은 24%이나, 분쟁금액은 전체 사건 금액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다.

68) 김영주, "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중재제도의 개혁동향", 중재연구(제29권 제2호), 2019. 6., 155면.

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문제이다.⁶⁹⁾ 법학전문대학원 때부터 중재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고, 외국의 로스쿨 학생들과 국제중재 실무능력을 겨룰 수 있는 VIS moot, FDI moot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무한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던 국제중재시장이 이제는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실제 가장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은 ICC와 SIAC의 국제중재 사건 수는 최근 3~4년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 일부 중재기관들은 감소 추세를 기록하고도 있다.⁷⁰⁾ 하지만, 일시적인 정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의 국제중재 사건 성장 추세와 국제교역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이는 기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여러 이유로 자제하였던 국제분쟁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이러한 분쟁들이 국제중재로 유입될 경우, 중재 사건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V.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1. 중재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정책 보완

가. 중재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중재산업 전반에 관해 업무를 위탁받은 상사중재원이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이다 보니, 사실상 ‘상사중재원 진흥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제중재실무회, 중재학회 등 국제중재 커뮤니티는 배제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 각계의 중재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설립이 필요하다. 특정 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⁷¹⁾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재사건 유치 및 홍보, 중재심리시설 운영·관리, 중재제도 및 법규칙 제·개정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중재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본계획의 수립 외에도 추진 사업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 등 역시 동 위원회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⁷²⁾

69)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18년 국제중재 관련 교과과목을 개설하고 상사중재원이 강사를 파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 후 2019년부터 강좌를 개설하였으나, 내부사정 등으로 2년만인 2020년 중단되었다.

70) 2010년대 이후 활발한 국제중재 홍보활동을 전개했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국제중재센터(VIAC)의 경우 역시 2018년 64건에서 2019년 45건, 2020년 40건, 2021년 44건 등 전체적인 흐름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71) 일례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실태조사 실시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의 중재산업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 기본계획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 및 한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역시 대부분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⁷³⁾ 아울러,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에 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 제4조 제3호에서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중재산업 실태 및 통계 조사'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 및 통계 조사에 관해 구체적인 방법 및 시행주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권고적' 내지 '선언적' 성격의 임의조항으로 둘 것이 아니라, 법에 그 시행주기 등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중재산업 수행 주체 다변화

가. 업무의 분산 위탁

법무부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한 중재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전반을 상사중재원에 위탁하였다. 그리고, 이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위탁사업의 실효성 및 충실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위탁사업을 상사중재원 외에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분산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중재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은 국제중재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중재실무회와 동 실무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소속된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중재가 발전된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중재기관과는 별도로 CIArb 등 중재인 단체 등에서 교육 및 인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⁷⁴⁾ 또한, 중재 관련 연구 관련 사업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사중재원이 아닌 중재학회와 같은 전문 학술단체에 위탁하고 예산 역시 별도

72) 윤진기,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중재연구(제28권 제4호), 2018., 36면.

73)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역시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4)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중재 전문인력 양성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7년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7, 118면.

로 지원하는 것이 중재 관련 연구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나. 분쟁해결시설 관리기관 분리·독립

심리시설 사용 확대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심리시설을 운영·관리할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심리시설 설치 전에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주장된 사안이며,⁷⁵⁾ 최근에 실시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즉, 별도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해서 상사중재원을 임차인으로 두고, 상사중재원의 국내 및 국제사건의 심리를 시설 법인에서 진행하도록 하면서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⁷⁶⁾ 물론, 기존의 정책을 번복해서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중재심리시설이 설치된 이후 이용현황, 임차료 수익,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상사중재원의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분석결과 심리시설의 운용이 사실상 충분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였다면, 앞서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과감한 개선 내지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국제중재기관의 분리·독립을 통한 역량 강화

가. 취지 및 배경

중재산업진흥법 제정 후 국제중재 역량 강화를 위해 상사중재원 내 국제중재 전담 조직인 ‘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동 센터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상당히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 역량이 역주행한 데에는 상사중재원 내부의 재정적인 이유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국제중재를 활성화하고 사건을 유치하겠다는 상사중재원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상사중재원은 중재분야에 있어서는 일종의 ‘특허’를 가지고 오랫동안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었다.⁷⁷⁾ 즉, 중재법상 국내 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이라는 배타적 권리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⁷⁸⁾ 인해 상사중재원은 그동안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었다. 이로 인해 국제중재사건 유치

75) 국제중재실무회, 앞의 보고서(2017), 288면.

76) 국제중재실무회, 앞의 보고서(2022), 112면.

77) 최근 타 ADR 기관들의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독점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콘텐츠분쟁의 조정을 통한 해결에 한계가 있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출처 : 박소은, “콘텐츠위에 중재기능 추가, 콘텐츠산업진흥법 문체위 통과”, 뉴스원, 2022년 2월 2일)

78) 중재법 제40조에서는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를 둘러싼 외국 중재기관과의 치열한 경쟁전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국제중재가 활성화될 수 없는 현재의 상태를 지속해서 방치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중재산업진흥 관련 사업들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 활성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상사중재원은 기존 건설중재를 비롯한 국내중재에 특화하여 명실공히 국내중재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중재는 별도로 분리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나. 설립 방향

상사중재원으로부터 국제중재를 분리하여 새로운 기관을 설립한다면, 이전의 SIDRC 모델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즉, 상사중재원에서 중재심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을 먼저 분리·독립시키고, 추후 동 기관으로 하여금 중재기관의 역할도 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싱가포르의 Maxwell Chambers-SIAC 모델과는 다소 상이하며, 홍콩의 HKIAC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985년 홍콩 정부는 홍콩을 아시아 제1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부상시키려는 구상 아래 비즈니스 중심지에 위치한 정부 소유 건물에 대규모 중재심리시설을 구축하였다.⁷⁹⁾ 그리고, 자체 중재규칙이 아닌 ICC 등 타 중재기관 중재규칙에 의한 사건과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ad hoc 사건을 유치하여 중재인 선정서비스,⁸⁰⁾ 중재비용 관리서비스⁸¹⁾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최초의 자체 중재규칙을 제정하면서 실질적인 중재기관으로 발돋움하였다.⁸²⁾ 즉, HKIAC의 전략은 기존 ICC, LCIA 등과 같이 이미 인지도가 높은 국제중재기관을 상대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초기에는 단순 중재심리시설 대여, 중재인 선정서비스 및 중재비용 관리서비스 등만을 제공하면서 국제적인 신뢰와 인지도를 축적해 나갔다. 교통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홍콩 중심에 위치한 좋은 시설과 질 높은 중재서비스로 중재인 및 중재 이용당사자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명성을 얻은 이후에야 자체 ‘브랜드’라 할 수 있는 HKIAC 중재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다. 우리 역시 HKIAC 전략을 분

79) 오현석,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홍콩의 전략”, 계간중재, 제329호, 상사중재원, 2009.

80) 홍콩에서 행해지는 ad hoc 중재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홍콩 중재법에 의해 HKIAC가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HKIAC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81) HKIAC는 ad hoc 중재에서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들이 요구할 경우,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분기별로 중재인 비용 및 중재인 수당을 계산하여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에 통지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본 금액을 납부요청·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KIAC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1년 단위로 일정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82) HKIAC 중재규칙 연혁에 관해서는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50 Questions & Answers” <<http://hkiac.org/arbitration/why-choose-hkiac/hkiac-administered-arbitration-faqs#001>> 참조(2023년 5월 15일 최종 방문)

석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주요 중재지와 중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우리로서는⁸³⁾ 곧바로 국제중재기관 브랜드를 런칭하기 보다는 HKIAC처럼 타 중재기관의 중재사건 및 ad hoc 중재사건에 대한 심리시설 대여 및 비용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기관의 조직 및 운영방안

중재산업진흥법 제10조에서는 동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설되는 국제중재기관은 이러한 독립성 및 자율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장 및 사무총장 등은 국제중재 커뮤니티 등의 추천을 받아 진정한 국제중재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HKIAC의 조직구조를 참고할 수 있다.⁸⁴⁾ 즉, 신설 국제중재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는 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 국제중재 커뮤니티의⁸⁵⁾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업무 및 조직에 있어서도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아닌 운영위원회, 홍보 및 교육위원회, 중재인 위촉 및 관리위원회 등을 두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한계 및 난제

(1) 재정문제

별도의 독립적인 국제중재기관 설립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자립이다. 특히, 기관 구성원의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실효성 있는 국제중재 활성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체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사건 접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단기간 내에 기관 운영을 위한 충분한 관리비용 수익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설 기관의 재정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

83) 퀸메리대학의 “2021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에 의하면, 중재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중재지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 파리, 제네바, 뉴욕, 베이징, 상하이, 스톡홀름, 두바이 순이었다. 즉, 서울은 여전히 중재지로서의 입지가 매우 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84) HKIAC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홍콩의 국제중재전문가들이 참여하는 HKIAC Council이 있고, 산하에 각 업무를 담당하는 Executive Committee, Finance & Administration Committee, Proceedings Committee, Appointments Committee, Nominations Committee 등을 두고 있으며 역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85) 이사회 참여 국제중재 커뮤니티로는 국제중재실무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협회, 대한중재인협회, 한국중재학회, 국제거래법학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어야 본 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법무부가 한시적으로라도 인건비 및 경상비를 보조하는 방안이다. 즉, 제2차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 중기예산을 배정하면서 5개년 한시적으로라도 인건비 및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설 기관이 초기에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만, 본 사업이 ‘민간보조금’이라는 특성상 인건비 등의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을 듯하다.

둘째, 중재심리시설의 이용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법무부의 재원으로 설치된 중재심리시설의 운영권을 신설 국제중재기관이 확보하여, ICC 등 타 중재기관의 중재심리는 물론 상사중재원 역시 임차인으로 하여 시설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⁸⁶⁾ 하지만, 상사중재원로부터 심리시설 운영권을 이전받아 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에 심리시설 이용료를 부담하게 한다면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쉬운 선택지는 아니지만, 중재심리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방안이다.

셋째, 국제상사조정센터 설립 시 기관운영을 위탁받는 방안이다. 2019년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 합의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싱가포르협약’)에 우리나라 역시 서명을 하였고,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만약, 싱가포르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후속 작업으로 국내이행법률 제정⁸⁷⁾ 및 국제상사조정기관 설립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국제상사조정기관의 경우, 싱가포르협약이라는 국제조약 및 국내이행법률에 근거한 법상 기관이 될 것이고, 국제상사조정 역시 우리 기업들의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⁸⁸⁾ 그리고, 국제상사조정기관에 지원되는 인건비 등을 통해 기본적인 조직운영은 가능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제상사조정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Med-Arb’으로⁸⁹⁾ 유도함으로써 중재사건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제상사조정에 관해서는 법무부의 싱가포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른 방안에 비해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시너지효과 역시 매우 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86) 국제중재실무회, 앞의 보고서(2022), 112면.

87) 법무부는 2019년 서명한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 (출처 : 류석우, “법무부,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위한 TF 발족”, 뉴스원, 2021년 3월 10일)

88)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수의 국내 행정형 조정위원회의 경우, 국민 및 기업들에 대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별도의 이용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기관의 운영비용은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89) ‘조정-중재(Med-Arb) 제도’는 조정과 중재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분쟁해결방식을 결합한 혼종형(hybrid) 분쟁해결방식이다. (출처, 정용균, “미국의 조정-중재(Med-Arb) 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24권 제1호), 2014. 2., 86면.

(2) 중재법상 관할 문제

중재법 제40조 및 부칙에⁹⁰⁾ 의해 상사중재원은 중재법상 유일한 중재기관으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28조의2 제2항 2호 상의 중재합의인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대해 현재 상사중재원의 독점관할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⁹¹⁾ 기존 정형계약서 상 ‘중재법에 따른 중재’의 관할 역시 상사중재원이고, 상사중재원은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다수의 건설중재 사건들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국제중재기관이 신설되고 동 기관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재법 제40조에 의해 법무부장관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재법 부칙 개정을 통해 신설 국제중재기관 역시 ‘중재법상 중재기관’이 된다면, 동 기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중재관할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때 기존 상사중재원과의 관할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재기관 간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재산업 발전을 취한다는 측면에서는 건설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4.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

각계의 기대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속에 힘차게 출발했었던 국제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의 기한 종반부인 현재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국제중재사건 실적 등이 역행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여 큰 변화 없이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현재 상황의 문제와 패인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성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재산업진흥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국제중재산업 진흥이 ‘허상’이었으며, 우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본 사업의 성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중재 ‘중재지’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여기에서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사실상 실패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할 시점이다. 때로는 기존 정책과 추진방법 등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통해 성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중·일 등 거대한 교역 국가들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가

90) 중재법 부칙 ③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9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지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및 홍콩과는 달리 대륙법계 국가로서 대부분 대륙법계 국가인 아시아에서의 국제중재 ‘허브’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⁹²⁾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국제커뮤니티를 포함한 각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인 중재지로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법무부는 중재산업진흥법 제정 성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국제중재 활용도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자체 평가를 하였다. 또한, 늦었지만 국제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하였다.⁹³⁾ 그리고, 이러한 정비방안을 토대로 곧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롭게 시작하는 기본계획에서는 이전의 미진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상사중재원을 유일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부분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재 관련 다수의 전문가 단체들이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 : 2023. 6. 30. / 심사개시 : 2023. 7. 10. / 게재확정 : 2023. 7. 19.)

92) 노자운, “세계 최대 국제중재법원 ICC 수장, 한국 중재지로서 잠재력 커”, 조선비즈, 2023년 5월 2일.

93) 김민정, “법무부, ‘국제중재 허브’ 도약 발판 마련,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 검토”, 조선비즈, 2022년 6월 29일.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단행본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2011)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중재 전문인력 양성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7년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7
- 국제중재실무회, 『복합중재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7
- 국제중재실무회,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해설』, 법안 제정위원회 4차 회의자료, 2015
- 국제중재실무회, 『국제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용역』, 법무부 용역보고서, 202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제1639호) 검토보고서』, 2021. 11.
- 김한균·김명수·박노형·김세준·조수혜·송병준,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12., 80면
- 삼일회계법인, 『복합중재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보고서』, 2016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6
- 신봉진,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2018
- 정교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2015.

논문

- 김영주, “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중재제도의 개혁동향”, 중재연구(제29권 제2호), 2019. 6.
- 성준호,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중재연구(제27권 제4호), 2017. 12.
- 오현석,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홍콩의 전략”, 계간중재, 제329호, 상사중재원, 2009.

32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3호 (2023.7.)

윤진기,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중재연구(제28권 제4호), 2018., 3.

이상하·하충룡, “아시아 중재 선진국의 국제중재 허브 육성전략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싱가포르와 홍콩을 중심으로”, 중재연구(제29권 제4호), 2019.

이영석, “동아시아 중재산업 현황 및 우리나라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통권 제158-3호), 2017.

조대연, “중재에 대한 단상과 국제중재 활성화”, 계간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봄호

정용균, “미국의 조정-중재(Med-Arb) 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24권 제1호), 2014. 2.

지성배, “중재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통상법률(2017-8)

한종규, “국가중재산업의 국가 지원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 제75호, 2016.

황현영,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4호, 2019. 12.

황현영,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제107호), 국회입법조사처(2019. 12.)

<외국문헌>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IA), Queen Mary University, “2021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Adapting arbitration to a changing world”, 2021.

Abstract

Evalua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and Leg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h, Hyun-Suk

As our companies'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were resolved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abroad, a large legal service deficit occurred every year, and the cost of resolving disputes was also a big burden on our compan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began efforts to emerge as an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ook the lead in establishing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and the 'Basic Plan for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Hereinafter, 'Basic Plan').'

However, as the first Basic Plan implementation project is being completed, it is being severely evaluated that our international arbitration capabilities have rather degenerated, and the driving force of related policies and projects has been lost. Therefore, at the present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start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Basic Plan, it can be said that a cool and objective evaluation of the existing deficient performances and analysis of the cause are essential. The reason for the deficient performance of the first Basic Plan is the ineffective financial support of the Ministry of Justice. It was difficult to achieve sufficient results because only the project cost was supported without practical support for labor costs. Another cause may be that all business consignment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dustry was concentrated o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Hereinafter, 'KCAB'), and the KCAB did not show sufficient capabilities. In addition, continuous attention i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nd lack of monitoring can also be pointed out as the cause of failure.

Therefore, the second Basic Plan to be newly promoted requires improvement on these

problems and limitations. Specifically, the Basic Pla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committee in which various fields participate, and the progress should be checked through regular fact-finding surveys. In addition, a method of distributing and entrusting projects monopolized by the KCAB to institutions with expertise in the project should be considered. Finally, in order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a new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separated and independent from the KCAB should be established, and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attract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Through this series of plans and policies, we will once again be able to dream of the emergence of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Key Words : Act on the Promotion of Arbitration Industry, Arbitration Act,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Arbitration Industry, Ministry of Justice,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Place of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